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748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7. 7.
판 결 선 고	2017. 8. 25.

주 문

1. 피고가 2016. 7. 12.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내역 기재 취득세 합계 7,272,3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한 처분일자 및 세액은 피고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 및 세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1)2)]

1) 피고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 차량 대수를 86대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표에 나타난 차량 86대 중 순번 23번(A)은 순번 22번(A)과 중복되고, 원고의 2016. 10. 4.자 보정서에 첨부된 각 독촉고지서 및 을 제5호증(세목별 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85대임을 알 수 있다.

2)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2016. 4. 12.자 취득세 7,587,430원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원고의 2016. 10. 4.자 보정서에 첨부된 각 독촉고지서의 본세는 합계 7,272,350원이고 가산금은 합계 216,670원으로 총 7,489,020원에 불과하므로 위 기재는 착오기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가산금은 본세 체납이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대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8. 4. 28.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1. 4.경부터 2015. 8.경까지 자동차 대여업에 사용할 차량 108대를 취득하면서 자동차 판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차량 85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차량 매수대금 중 일부를 [redacted]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할부금융 방식으로 조달하여 자동차 판매업자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할부이자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6. 7. 12. 원고에게 56허7001호에 대한 취득세 196,440원을 경정 · 고지하는 등 별지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자동차 85대에 대한 취득세 합계 7,272,35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동차 판매업자로부터 차량을 구매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을 조달하여 지급한 경우, 그 대출이자는 차량을 구매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차량을 취득한 후의 대출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어서 차량의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 또는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

세가 취소되면 당연히 가산금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등 금융비용,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는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은 '차량의 경우에는 그 제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제13항은 '제1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이 건설자금이자, 할부·연부이자 등의 간접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직접, 간접의 소요금액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취지이므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에 소요된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 즉 제3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역시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에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어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268 판결 참조).

그런데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 할부·연부이자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건설자금이자, 할부·연부이자와 그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규정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할부·연부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전에는 그에 대응하는 수익을 상정하기 어려워 그 취득시기 이전에 지출된 비용은 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고 취득 후에 지출된 비용은 손익대응의 원칙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설자금이자, 할부·연부이자의 자본화 시기와 종기는 차입일부터 취득일까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만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5517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한편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어야 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매매대금 내지 차입금을 할부로 지급하되 할부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할부이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3자로부터 할부금융을 받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면서 제3자에게 담보물권을 설정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할부이자는 차입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령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이전에 할부금융에 관한 약정에서 향후에 발생할 이자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자발생의 원인이 될 대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자가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제3자로부터 할부금융을 받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출일부터 그 취득일까지 발생한 할부이자만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하고, 취득일 후에 발생한 할부이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없다.

3)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1. 4.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날 혹은 그 며칠 후에 매매계약 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할부금융회사에 보내 할부금융회사로 하여금 자동차제조회사에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할부금융회사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담보물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실제 대출금이 지급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한 시기는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인도일이 되는데, 원고가 할부금융회사에 지급하는 할부이자는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서 그 취득일까지 발생한 것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할부이자 중 자동차취득일과 대출일이 일치하는 것에 관하여 그 하루 동안의 할부이자만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하고, 그 취득일 후에 발생한 할부이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할부이자 중 자동차취득일과 대출일이 일치하는 것에 관하여 그 하루 동안의 할부이자가 얼마인지 내지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경우의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할부이자 전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하태흥

판사 박용근

판사 이정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별지

부과내역

과세일자 납부기한 납부일자	과세물건명 발송일자 우편번호	주소	과세표준	본 세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3,650,449	196,440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1,026,122	54,340
2016/07/06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1,518,703	105,890
2016/07/06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2,306,276	152,010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1,336,739	70,790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2,270,730	130,570
2016/07/06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787,517	50,940
2016/07/06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시 [redacted] [redacted]	2,272,822	149,720
2016/07/06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1,135,860	73,950
2016/07/06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2,296,785	156,480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1,346,000	71,2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과세일자 납부기한 납부일자	과세물건명 발송일자 우편번호	주소	과세표준	본 세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336,739	70,790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3,971,727	213,720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274,727	82,440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426,829	80,780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336,739	70,790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426,829	80,780
2016/07/10				
2016/07/31 2016/11/07	2016/07/13 06172	[redacted]	1,518,703	105,890
2016/07/06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920,877	64,130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2,358,304	136,700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312,399	73,910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336,739	70,79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과세일자 납부기한 납부일자	과세물건명 발송일자 우편번호	주소	과세표준	본 세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439,569	76,250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698,877	96,690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346,000	71,280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346,000	71,280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431,327	72,570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423,180	81,350
2016/07/06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122,150	72,570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346,000	71,280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511,628	88,190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394,610	80,050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88,312	4,6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과세일자 납부기한 납부일자	과세물건명 발송일자 우편번호	주소	과세표준	본 세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09,305	5,660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2,199,602	124,080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26,821	5,120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423,180	81,350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426,829	80,780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312,399	73,910
2016/07/06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2,309,916	152,150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346,000	71,280
2016/07/06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135,203	73,910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142,617	65,590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394,610	80,05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과세일자 납부기한 납부일자	과세물건명 발송일자 우편번호	주소	과세표준	본 세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2,022,290	104,400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385,653	80,840
2016/07/06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735,130	112,240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197,457	67,020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2,274,926	146,760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151,620	61,570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336,739	70,790
2016/07/06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2,306,276	152,010
2016/07/06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815,087	119,630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394,610	80,050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336,739	70,79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과세일자 납부기한 납부일자	과세물건명 발송일자 우편번호	주소	과세표준	본 세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346,000	71,280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336,739	70,790
2016/07/06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391,186	91,740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125,920	58,120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88,312	4,260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88,312	4,200
2016/07/06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391,186	91,740
2016/07/06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2,277,303	151,160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346,000	71,280
2016/07/06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274,841	87,290
2016/07/06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391,186	91,7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과세일자 납부기한 납부일자	과세물건명 발송일자 우편번호	주소	과세표준	본 세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336,739	70,790
2016/07/10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481,256	31,130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346,000	71,280
2016/07/06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391,186	91,740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125,920	58,120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499,016	70,640
2016/07/06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397,117	92,020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336,739	70,790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346,000	71,280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2,022,290	104,400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049,391	50,0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과세일자 납부기한 납부일자	과세물건명 발송일자 우편번호	주소	과세표준	본 세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049,391	55,570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049,391	55,570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079,673	57,170
2016/07/08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431,327	72,570
2016/07/06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2,306,276	152,010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394,610	80,050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3,650,449	196,440
2016/07/07				
2016/07/31	2016/07/13 06172	[redacted]	1,521,972	96,900
	85건			7,272,35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③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끝.